

「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」 시행에 따른

평창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3년 5월 2일, 평창군수 제출
- 회부일자: 2023년 5월 17일 회부
- 상정일자: 제28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
(2023년 5월 17일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: 기획실장)

가. 제안이유

「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」 시행('23. 6. 11.)에 따라
평창군 조례안의 조문을 일관성 있게 정비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1) 조문 내용 변경
 - 강원도 ⇒ 강원특별자치도
 - 강원도지사 ⇒ 강원특별자치도지사
- 2) 정비 대상 : 20개 부서, 61개 조례안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: 김영옥)

○ 본 조례안은

「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」 시행(‘23. 6. 11.)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조문을 일관성 있게 정비하려는 것으로,

○ 61개 조례안에 명시된 용어 중 강원도를 '강원특별자치도' 로, 강원도지사를 '강원특별자치도지사' 로 일괄 변경함.

○ 검토결과,

일반적으로 자치법규를 개정하는 때에는 하나의 법규를 대상으로 개정안을 상정하여 개정함이 원칙이나,

개정의 목적이나 사유가 유사할 시, 입법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일괄개정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,

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